

##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- 1059호

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31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#### 1. 재입법 예고 사유

종전 입법예고(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270호)된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중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재입법을 추진하고자 함

가.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이 부실방지를 위하여 책무를 다한 경우 별점을 받지 않은 양벌 면책규정은 급변 시행령 개정에서 제외하고

나. 건설엔지니어링사의 반기별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을시 경감 혜택 관련, 별점 경감 적용은 이 영 시행일에 속하는 반기로 수정

#### 2. 주요내용

가. 별점 측정기준중 각 목별 기준에 대한 별점 부과요건을 합리적으로

조정·보완(안 별표8 제5호 가·나·다목)

- 나.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안전역할 확대, 안전관리 노력 진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자·주택건설등록업자에만 적용하는 반기별 연속 사망사고가 없을시 경감기준을 적용(안 별표8 제5호 바목 1)
- 다. 건설사업자,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사를 잘 관리하도록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는 경감하고 남은 점수를 적립·활용토록 혜택 확대(안 별표8 제5호 바목 2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기술기준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 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우) 30103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

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

- 전자우편 : sky1001@korea.kr

- 팩스 : 044-201-5553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, “정보마당-법령정보-입법예고란”)를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(044-201-459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